





##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승·김창윤\*

### 〈요 약〉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주제어 : 경찰예산, 결산, 프로그램 예산, 국회예산정책처, 경찰**

\*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주저자)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

- |  |
|--|
| I. 서 론<br>II. 경찰예산의 체계 및 결산과정<br>III. 연구방법<br>IV. 분석결과<br>V. 결 론 |
|--|

## I. 서 론

우리 경찰은 2007년 이전까지 경찰활동의 통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편성 기법인 ‘품목별 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과 중심의 정부활동, 결과중심의 정부활동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요구되면서 정부에서는 품목별예산제도에 기반한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우리경찰에서도 정부의 예산제도 변경에 따라 2007년부터 품목별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경찰사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조직으로서 한 해 8조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 역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2012년도의 경찰장 교체 사례<sup>1)</sup>만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경찰의 예산사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올바른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경찰은 2011년 11월 계급중심의 문화를 업무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급을 알리는 계급장 대신 경찰을 상징하는 경찰장을 다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시행 6개월만에 백지화해 4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서울신문, 2012. 6. 20).

그 동안 경찰의 예산에 관련된 연구로는 이말남(1997), 박성수(2002), 함우식(2005), 이황우·주성진(2009), 김진동(2009)·(2010), 민형동·주성진(2010), 민형동(2011)·(2012), Balakrishnan, Soderstrom, & West(2007), Zhao, Ren & Lovrich(2010). 등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예산을 프로그램별로 분석하고 경찰예산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경찰예산에 관련된 제반 연구자료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예산의 편성 및 결산 체계를 통해서 경찰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결산이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경찰예산의 집행은 결국 조직의 운영과 인사의 효율적 배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의 예산집행 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셋째, 경찰의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Ⅱ. 경찰예산의 편성 및 결산 체계

### 1. 경찰의 예산체계 및 편성

#### 1) 경찰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재정자율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07년부터 그동안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이효, 2008: 5).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행정안전부, 2008: 34).

2007년부터 도입된 경찰의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는 경찰사업, 경찰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사업 및 프로그램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이다. 이와 같이 사업 및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경찰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 2) 경찰예산의 편성

정부의 예산<sup>2)</sup>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경찰예산 역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도 정부제출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과 사회복지라는 2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회계간 거래와 <표 3>의 8개 프로그램을 합해 총 9개의 프로그램(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경찰의 일반회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 용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악자 보호	• 생활안전활동, 범죄대응역량강화, 여성청소년보호활동,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범죄수사활동	• 범죄수사역량강화, 현장수사활동, 형사사범업무전산화, 범죄감식 및 관리, 과학수사시스템구축, 사이버범죄수사 등
교통안전·소통확보	• 교통안전교육홍보, 교통안전활동, 교통과학장비관리, 도로교통공단출연, 교통행정 전산화 등
사회질서유지	• 경비경찰활동, 전의경 운영 및 관리,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전의경 대체지원, 치안정보활동, 치안정보전산화 등
국가안보확보	• 보안수사활동, 특수입무수행자 보상, 외사경찰활동, 해외치안협력강화, 국제치안활동강화, 대테러상황관리 등
전문경찰양성	• 경찰대학운영, 경찰보수교육, 신입순경교육, 수사경찰전문교육, 인성을 갖춘 경찰관 채용·교육선진화,
치안인프라구축	• 경찰기동력강화, 피복관리, 장비관리유지, 차량관리, 헬기운용 및 현대화, 경찰 유무선망 개선, 치안시스템고도화, 경찰청홈페이지 운영
경찰행정지원	• 행정업무지원,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청사시설관리, 지방청경무활동 지원,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경찰청 및 지방청 인건비 등

※ 자료 : 경찰청, 2013: 15-408 재정리

그리고 특별회계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2) 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1항). 일반회계는 국세 수입 및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이런 일반회계는 정부의 재정 체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반면,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2항).

특별회계 3개로 이루어져 있다.<sup>3)</sup> 2014년 경찰청 예산기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는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는 교통안전·소통확보와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는 경찰병원운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 2. 결산의 의의 및 과정

### 1) 결산의 의의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의 세입·세출예산과 관련된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영진, 2012: 207). 이러한 결산은 예산 주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예산편성-심의-집행-결산)로서 예산의 집행이 편성 당시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집행과정에서 적법성이 유지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위이다.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국회예산정책처, 2010a: 81). 첫 번째는 사후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결산은 정부의 각 기관들이 예산을 운용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지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sup>4)</sup> 세 번째는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한 뒤 이를 해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국회의 결산 심의가 끝나면 예산을 운용한 주체의 책임 역시 해제되는 의미를 갖는다.

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 또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4)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결산의 과정

결산의 절차는 크게 행정부 내에서의 결산절차와 국회에서의 결산심의절차로 이루어진다.

### (1) 행정부의 결산절차

행정부의 결산절차는 「국가재정법」 등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결산의 원칙(「국가재정법」 제56조)에 기반해서 결산을 실시한다.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세입과 세출의 출납사무를 완결해야 하며, 이러한 출납사무의 완결은 결산의 전제가 된다(윤영진, 2012: 210).<sup>5)</sup> 다음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8조 제1항).<sup>6)</sup>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9조, 제60조). 정부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행정부에서의 결산과정은 마무리된다.

### (2) 국회의 결산심의

국회에서는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국회의 결산심의 절차는 「국회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며,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친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sup>7)</sup> 의장은 이를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84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

5)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 완결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국고금관리법 제4조의2)

6)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58조 제2항).

7) 예비심사과정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위원회 심사보고, 찬반보고, 의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책질의,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를 거쳐 의장은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하며, 본회의에서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 3) 결산심의의 기능

행정부에서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국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는 재정집행에 대한 승인이라는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재정통제기능과 환류기능을 가진다(국회예산정책처, 2013: 71).

재정통제기능이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최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환류기능이란 결산을 통해 재정을 운용한 결과를 파악하여 불필요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된 예산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현재 집행중인 당해연도의 예산집행에 즉각 반영함은 물론,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차기연도의 예산안 심사 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 1) 법적근거

「국회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되어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표 1>에서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과 관련해서는 매년 정부의 결산안을 바탕으로 국회의 결산심사가 시작하기 직전에 총괄분석을 포함한 결산분석 보고서들을 발간하고 있다.

〈표 1〉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li> <li>◆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li> <li>◆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li> <li>◆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li> <li>◆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li> </ul>
--

## 2) 결산분석의 주요사항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표 2>와 같은 12개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의 유사·중복, 집행실적 부진,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목적 외 사용, 집행관리 부적절 등 예산집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1).

<표 2> 결산분석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재정운영기조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위기에 대응하여 편성된 사업들이 경기활성화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li> <li>일자리지원사업의 고용창출효과 분석 등</li> </ul>
성과달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지출에 따라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점검</li> <li>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저조한 경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한지 사업설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등</li> </ul>
국회 지적사항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 결산시정요구사항, 예산 부대의견,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이 집행 단계에서 반영되었는지 점검 등</li> </ul>
예산의 낭비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유휴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증가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 등</li> </ul>
재정집행의 부수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조율이 설정되었는지 분석 등</li> </ul>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가 예산을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점검 등</li> </ul>
사업추진절차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는지 점검 등</li> </ul>
재정 전달체계의 누수요소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급여의 부정·중복수급 사례 분석</li> <li>전달체계가 복잡하여 관리비용이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 등</li> </ul>
유사한 사업의 중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목적이나 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 등</li> </ul>
사업의 지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계속사업이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업의 효과가 급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토 등</li> </ul>
수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수납액 과다 사례 분석 등</li> </ul>
예산 외로 운용되는 국가 재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재정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규모는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 등</li> </ul>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b: 20-23.

### Ⅲ.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경찰청의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보고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예산의 전반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예산의 집행 실태를 평가함과 동시에 실제로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에 있어 이 보고서가 각 의원실의 결산관련 질의서 작성에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분석의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한다. 4년의 기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2013년의 결산자료는 2014년 5월말에 정부에 제출되기 때문에 2013년도 결산자료는 분석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2009년 이전의 결산자료는 각 정부부처별로 분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의 통일성을 위해서 경찰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산분석을 한 시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분석방법

분석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결산분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분석 자료를 내용분석하며, 분석의 방법은 각 세부 지적사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하나의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일지라도 그 항목에 따라 여러 가지의 집행 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분석사항 각각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예산 집행 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유는 목적 외 사용<sup>8)</sup>, 법령위반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과 사업계획 부실,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등 예산편성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의 문제점으로 야기된 사항, 집행실적 부진, 집행관리 부적절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집행지침 미준수 등으로 야기된 사

8) 국가개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예산집행 실태를 크게 예산의 프로그램별과 담당부서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예산의 집행실태를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각 연도별 예산의 프로그램명칭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가장 최근인 2014년도의 경찰청 예산 프로그램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변경된 프로그램명에 맞게 관련 내용을 조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담당부서의 명칭 역시 2014년 현재의 경찰청 직제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 IV. 분석결과

###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내용분석 결과 경찰청의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14건, 2011년에는 10건으로 두 자리 이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2년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무려 27건이 발견되어 직전 3개년도의 합계와 동일한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집행문제와 관련된 사유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인 집행관리 부적절이 20건(37.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불필요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거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예산을 적게 편성한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9건, 16.7%), 집행실적 부진(6건, 11.1%), 사업성과 미흡(4건, 7, 4%), 법·제도 미비(4건, 7, 4%), 목적 외 사용(3건, 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부서별로 살펴보면 교통국이 22건(40.7%)으로 가장 많은 집행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활안전국(7건, 13.0%), 기획조정관(5건, 9.3%), 경찰대학·경무인사기획관(4건, 7, 4%), 수사국·외사국·경찰병원(2건, 3.7%), 감사관·경비국·중앙경찰학교(1건 1.9%), 기타(3건, 5.6%)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예산의 프로그램별로는 교통안전·소통확보가 21건(38.9%)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행정지원

이 12건(22.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범죠평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6건, 11.1%), 전문경찰양성·치안인프라 구축(3건, 5.6%), 범죠평수사활동·국가안보확보·경찰병원운영(2건, 3.7%), 사회질서유지(1건, 1.9%), 기타(2건, 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건)	백분율(%)
전 체		54	100
년 도	2009년	3	5.6
	2010년	14	25.9
	2011년	10	18.5
	2012년	27	50
집행 문제점	집행관리 부적절	20	37.0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9	16.7
	집행실적 부진	6	11.1
	사업성과 미흡	4	7.4
	법·제도 미비	4	7.4
	목적외 사용	3	5.6
	법령위반	2	3.7
	사업의 유사·중복	2	3.7
	사업계획 부실	1	1.9
	기 타	3	5.6
담당부서	교통국	22	40.7
	생활안전국	7	13.0
	기획조정관	5	9.3
	경찰대학	4	7.4
	경무인사기획관	4	7.4
	수사국	2	3.7
	외사국	2	3.7
	경찰병원	2	3.7
	감사관	1	1.9
	경비국	1	1.9
	중앙경찰학교	1	1.9
	기 타	3	5.6

구 분		빈 도(건)	백분율(%)
프로그램	교통안전·소통확보	21	38.9
	경찰행정지원	12	22.2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6	11.1
	전문경찰양성	3	5.6
	치안인프라 구축	3	5.6
	범죄수사활동	2	3.7
	국가안보확보	2	3.7
	경찰병원운영*	2	3.7
	사회질서유지	1	1.9
	기 타	2	3.7
회계	일반회계	42	77.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	13.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	5.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3.7
세출입	세 출	52	96.3
	세 입	2	3.7

\* 경찰병원운영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프로그램임

회계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2건(77.8%)으로 예산의 비중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별회계가 12건(22.2%)이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7건(13.0%)으로 가장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광역교통정보관리체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혁신건설특별회계(3건, 5.6%)는 경찰대학 이전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관련된 지적이었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건, 3.7%)는 경찰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구분에서는 대부분이 실질적인 집행과 관련된 세출과 관련된 부분이 다수(52건, 96.3%)를 이루고 있었으며, 세입은 2건(3.7%)에 불과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낮은 징수실적 및 세입예산 미편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 2. 부서별 집행 문제점

부서별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집행관리 부적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국과 생활안전국, 경찰대학, 수사국, 외사국, 경찰병원, 경비국, 중앙경찰학교 모두 집행관리 부적절이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을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교통국의 경우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산집행 감독미흡 등의 집행관리 부적절(9건, 40.9%)과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5건, 22.7%)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집행지침 미준수와 효과적인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예산 편성 당시에 무인단속장비 위탁관리 수입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3건, 3.6%),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등의 법령위반(2건, 9.1%), 교통안전 체험과 관련된 지자체의 교육 미흡 등 사업성과 미흡(2건, 9.1%)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예산편성 당시의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이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연구용역을 중복 수행 하는 등의 사업의 유사·중복(28.6%)과 통합 112신고시스템과 관련된 사업계획 부실·예산의 과다/과소편성(1건, 14.3%)이 나타났으며, 경찰청 예산집행의 전반적 문제인 집행관리 부적절(2건, 28.6%) 역시 나타났다.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기관을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의 법·제도 미비(2건, 4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용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목적외 사용(1건, 20%),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적 편성에 미흡했던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1건, 20%), 기타(1건, 20%)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의 경우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미흡 등의 집행관리 부적절(3건, 75%)과 집행실적 부진(1건, 25%) 등 집행 상의 관리 미흡이 주요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무인사기획관은 경찰수련원 연료비 집행 등의 목적외 사용(2건, 50%)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청 전체의 4년간 목적 외 사용이 3건인 것을 볼 때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집행관리 부적절과 법·제도 미비(1건, 25%) 역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수사국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관리 부적절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진술영상녹화실 사용실적 저조로 인한 사업성과 미흡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외사국은 체류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 등과 관련된 집행관리 부적절과 경찰관 외국어 검정시험 응시료 지원과 관련된 지적(기타)을 받았다. 감사관은 법제도 미비로 인한 지적을 받았으며, 경비국과 중앙경찰학교는 집행관리 부적절로 인한 지적을 받았다.

〈표 5〉 부서별 집행 문제점

구 분		집행관리 부적절	집행실적 부진	목적외 사용	법령 위반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성과 미흡	법·제도 미비	기 타	계
교통국	건수	9	5	0	2	3	0	0	2	0	1	22
	비율	40.9	22.7	0	9.1	13.6	0	0	9.1	0	4.5	100
생활 안전국	건수	2	0	0	0	1	1	2	1	0	0	7
	비율	28.6	0	0	0	14.3	14.3	28.6	14.3	0	0	100
기획 조정관	건수	0	0	1	0	1	0	0	0	2	1	5
	비율	0	0	20	0	20	0	0	0	40	20	100
경찰 대학	건수	3	1	0	0	0	0	0	0	0	0	4
	비율	75	25	0	0	0	0	0	0	0	0	100
경무인사기획관	건수	1	0	2	0	0	0	0	0	1	0	4
	비율	25	0	50	0	0	0	0	0	25	0	100
수사국	건수	1	0	0	0	0	0	0	1	0	0	2
	비율	50	0	0	0	0	0	0	50	0	0	100
외사국	건수	1	0	0	0	0	0	0	0	0	1	2
	비율	50	0	0	0	0	0	0	0	0	50	100
경찰 병원	건수	1	0	0	0	1	0	0	0	0	0	2
	비율	50	0	0	0	50	0	0	0	0	0	100
감사관	건수	0	0	0	0	0	0	0	0	1	0	1
	비율	0	0	0	0	0	0	0	0	100	0	100
경비국	건수	1	0	0	0	0	0	0	0	0	0	1
	비율	100	0	0	0	0	0	0	0	0	0	100
중앙 경찰학교	건수	1	0	0	0	0	0	0	0	0	0	1
	비율	100	0	0	0	0	0	0	0	0	0	100
기 타	건수	0	0	0	0	3	0	0	0	0	0	3
	비율	0	0	0	0	100	0	0	0	0	0	100

$X^2 = 113.551, N=54$



### 3. 프로그램별 집행 문제점

2014년 정부가 제출한 경찰청의 프로그램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경찰행정지원이 약 85.5%로 가장 많으며, 치안인프라구축(4.3%), 교통안전·소통확보(3.2%), 사회질서유지(2.4%), 범죄수사활동(1.6%),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0.7%), 경찰병원 운영(0.7%), 국가안보확보(0.6%), 전문경찰양성(0.6%) 순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정부, 2013: 306-311).

<표 6>은 프로그램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표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예산액과는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통안전·소통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많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교통국에서 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교통국의 분석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관련해 종료된 사업의 이월처리와 관련된 집행관리 부적절의 문제점이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경찰행정 지원의 경우는 10가지 유형의 집행문제점 중 가장 많은 7가지에 해당되었으며, 집행관리 부적절과 법·제도 미비(3건, 25%),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2건, 16.7%), 집행실적 부진·목적외 사용·사업의 유사/중복·기타(1건, 8.3%)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단계적인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으며,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특정 부서에서 담당하는 예산항목이 아니라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 경찰대학 등 다양한 부서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었다.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는 집행관리 부적절(2건, 33.3%)이 가장 높았으며,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사업계획 부실·사업의 유사/중복·사업성과 미흡(1건, 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생활안전국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연구개발을 중복으로 수행하여 사업의 중복/유사에 해당하였던 예산집행내역은 경찰행정지원에 포함되었다.

전문경찰 양성은 3건의 지적사항 모두가 집행관리 부적절에 해당했으며, 연구개발비, 교육사업 건설비,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미흡 등이 이에 해당했다. 치안 인프라 구축은 경찰차량과 수련원과 관련된 목적외 사용(2건, 66.6%)과 법·제도 미비(1건, 33.3%)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 활동은 수사국, 국가안전 확보는 외사국, 경찰병원 운영은 경찰병원, 사

회질서유지는 경비국에서 살펴본 사항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네 프로그램 모두 집행관리 부적절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타로는 세입예산 미편성에 따른 초과수납과 적절하지 못한 규모의 세입예산의 편성이 해당되었다.

〈표 6〉 프로그램별 집행 문제점

구 분	집행관리 부적절	집행실적 부진	목적외 사용	법령 위반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성과 미흡	법·제도 미비	기 타	계	
교통안전 소통확보	건수	8	5	0	2	3	0	0	2	0	1	21
	비율	38.1	23.8	0	9.5	14.3	0	0	9.5	0	4.8	100
경찰행정 지원	건수	3	1	1	0	2	0	1	0	3	1	12
	비율	25	8.3	8.3	0	16.7	0	8.3	0	25	8.3	100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	건수	2	0	0	0	1	1	1	1	0	0	6
	비율	33.3	0	0	0	16.7	16.7	16.7	16.7	0	0	100
전문경찰 양성	건수	3	0	0	0	0	0	0	0	0	0	3
	비율	100	0	0	0	0	0	0	0	0	0	100
치안 인프라구축	건수	0	0	2	0	0	0	0	1	0	0	3
	비율	0	0	66.7	0	0	0	0	33.3	0	0	100
범죄수사 활동	건수	1	0	0	0	0	0	1	0	0	0	2
	비율	50	0	0	0	0	0	50	0	0	0	100
국가안보 확보	건수	1	0	0	0	0	0	0	0	0	1	2
	비율	50	0	0	0	0	0	0	0	0	50	100
경찰병원 운영	건수	1	0	0	0	1	0	0	0	0	0	2
	비율	50	0	0	0	50	0	0	0	0	0	100
사회질서 유지	건수	1	0	0	0	0	0	0	0	0	0	1
	비율	100	0	0	0	0	0	0	0	0	0	100
기 타	건수	0	0	0	0	2	0	0	0	0	0	2
	비율	0	0	0	0	100	0	0	0	0	0	100

$\chi^2 = 88.886, N=54$

## 4. 경찰예산의 효율화 방안

### 1) 상시 예산점검 체계 구축

경찰청 예산집행 내역의 분석결과 집행관리 부적절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을 받은 대부분의 부서와 예산 프로그램에 동일한 지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집행관리 부적절은 예산의 집행관련 지침이나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진행에 있어서의 준비나 감독 미흡 등으로 야기되는 것들이 다수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집행내역 점검을 통해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경찰청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경찰청에서는 현재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sup>9)</sup> 이 회의체에서 다루어지는 심의사항들은 평상시의 예산집행을 점검하기에는 일정부분 제약이 따른다.<sup>10)</sup> 그러므로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한다.

현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 3에 따르면 경찰청의 예산집행과 회계관리는 경무인사기획관이 담당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기획조정관의 주요임무 중 하나로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 관의 협력하에 별도의 TF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업무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예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점검체계를 마련한 뒤에는 그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의 내용들이 집행지침 등에 어긋나 있는 지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예산이 편성된 의도에 맞게 집행실적이 잘 나타나고 있는 지, 실질적인 사업의 관리 감독은 잘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해야 한다. 더불어 보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재정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

9) 「국가재정법」 제9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10) 예산집행심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심의사항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

1. 예산편성·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예산집행 우선순위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법령에서 본심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청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

어질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2) 부서 · 지방경찰청별 집행실적에 따른 패널티 부과

부서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통국에서 지적사항의 40%이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부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다.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패널티는 부서평가 점수에 감점을 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예산의 삭감역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며, 11) 기획재정부 역시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집단을 받은 정부의 사업에 대해 차기년도 예산을 10% 삭감하고 있다(조세일보, 2013. 5. 29). 경찰에서도 법령위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먼저 부서 또는 지방경찰청의 필수경비(인건비 등)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일정부분 삭감하는 방식을 도입해 예산집행 관리의 엄격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3) 예산편성의 신중 기여

결산분석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 중 예산의 편성단계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항이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적사항의 상당부분이 편성단계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계상함으로써 잔액이 남아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사항은 차기년도 예산 심사 시 동일 사업에 있어서 예산삭감의 원인이 되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산을 편성할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예산편성 시에는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에서 하달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법률과 지침에 위반됨이 없이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전년도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꼭 반영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점까지의 예산만을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과다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11) 보령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조례제정 전 예산집행 등) 예산을 집행하여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세를 15억 6천만원 삭감당했으며(충청투데이, 2013. 3. 26), 부산 영도구의회는 법률을 위반한(수의계약 위반 등) 예산집행 등을 지적하며 “영도 빛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국제신문, 2013. 12. 22).

더불어 각 부서 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의 중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당시에 각 부서별로 용역사항을 상호 교류하고, 연구용역의 발주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중복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찰의 지난 4년간의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결산분석 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11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3건에 불과했던 지적사항이 2012년에는 27건으로 늘어나 경찰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간과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감독소홀이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집행실적 부진 역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적외 사용을 포함한 예산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10% 가량 된다는 점은 경찰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여져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또한 거의 매년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편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부서 및 프로그램별로 분석한 결과 교통과 관련된 부서와 프로그램의 집행상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사유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교통국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부서와 프로그램 역시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가장 주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지만 기획조정관, 감사관과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법·제도미비가 경무국은 예산의 과다/과소편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부서 및 프로그램별로 예산집행 단계에서의 맞춤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연간 8조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의 예산집행은 대부분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분석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시적 예산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감독소홀이나 부주

의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진행과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부서 및 지방경찰청과 관련해서는 예산삭감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여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처벌의 엄격성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상당수의 결산지적사항이 예산 편성 단계의 문제점과 연계되므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수립과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불용, 이월되거나 예산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찰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내용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부서별, 프로그램별로 진단함으로써 각 부분의 부족한 사항에 맞게 맞춤형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 역시 예산집행과 관련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보의 접근성 문제로 인해 경찰이 실제로 집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내역 분석을 상세하게 하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추후 연구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여 경찰의 예산집행 실태를 좀 더 명확하게 진단한 연구논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해규. (2005).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고경환. (2009). “사회복지예산의 누수유형과 개선과제”. 「보건복지포럼」. 157: 80-98.
- 김상구·조현빈. (1007). “한국 경찰활동의 다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4: 89-108.
- 김성수. (2008). “노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시, 군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907-923.
- 김지경·정윤미. (2013).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1): 227-256.
- 김진동. (2009).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8(4): 63-90.
- 대한민국 정부. (2013). “2014년도 예산안”.
- 민형동. (2009). “국회의 경찰예산 심의 내용의 실증분석-행안위, 예결특위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30: 61-91.
- \_\_\_\_\_. (2010). “국회의 경찰통제에 대한 실태 분석: 제16, 17, 18대 국회의 입법활동, 예산결정,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8: 107-137.
- \_\_\_\_\_. (2012). “정파성이 경찰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국회의 경찰예산심의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36: 85-113.
- 박경래. (2010). “경찰예산편성제도 비교: 성과중심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0: 115-150.
- 박성수. (200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예산확보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4: 297-320.
- 박윤환. (2012).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0(2): 201-226.
- 엄익천. (201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윤영진. (2012). 「새재무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말남. (1997). “경찰예산의 배분에 관한 연구”, 「계명행동과학」. 9(1).
- 이상훈. (2008). “교통경찰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265-283.
- 이성욱·윤석중. (20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행태에 관한 연

- 구”. 「관리회계연구」. 13(2): 99-129.
- 이정주. (2011). “지능화된 부패인가? 반복적인 부패인가? : 예산낭비유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1-20.
- 이창무·이도신. (2013).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법행위 실태와 관광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7: 177-198.
- 이황우·주성진. (2009). “한국경찰예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 295-324.
- 이효. (2008). “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지방재정과 지방세」8: 3-27.
- 한삼암·박한호·이명우, (2013).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에 대한 연구 : 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36: 227-253
- 한흥태. (2000). “경찰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 306-335.
- 함우식. (2005). “경찰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9(3): 441-468.
- 국회예산정책처. (2010a). 「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 \_\_\_\_\_. (2010b). 「2009 회계년도 결산분석 가이드라인」.
- \_\_\_\_\_. (2013).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
- \_\_\_\_\_. (2014).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제출자료”
- 행정안전부. (2008). 「2008년 사업예산운영규정」.
- Balakrishnan, R., Soderstrom, N. S., & West, T. D. (2007). Spending patterns with lapsing budgets: Evidence from US Army hospitals.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19(1), 1-23.
- Zhao, J., Ren, L., & Lovrich, N. P. (2010). “Budgetary support for police services in US municipalities : Comparing political cultur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incrementalism as rival explanations for budget share allocation to pol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8(3): 266-275.
- 「국민일보」. “예산안 처리 둘러싸고 만성화된 정치권 행패” (2014. 1. 2)
- 「국제신문」. “영도 빛 축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잡음” (2013. 12. 22)
- 「경남신문」. “사천세계타악축제 북소리 멎나” (2013. 12. 23)
- 「아시아뉴스통신」. “사천세계타악축제 예산삭감에 지역주민들 ‘잘했다’” (2013. 12. 23)
- 「조세일보」. “정부 재정사업 24% ‘미흡’, 2014년 예산 10% 삭감” (2013. 12. 23)
- 「충청투데이」. “보령시 부실예산운영에 교부세 삭감” (2013. 3. 26)



【Abstract】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of Police Budget

Park, Jong-Seung  
Kim, Chang-Yun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problems of police budgetary execution and to suggest better ways for establishing effective budget implementation as well as legitimacy of securing budget in the field of police work.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the annual reports on police budgetary execution, from 2009 to 2012, conducted by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n result, most parts of the police budgetary execution were not satisfied with the audit standard, and especially in terms of management of budgetary execution, it showed 40% in inappropriateness. In addition, excessive and underestimate appropriation in the police budgetary execution, which happened frequently in other offices, was recorded on the second place. 10% of the amount of budget was executed for ordinance violence.

Given results analyzed from each division, Transportation Division occupied 40% of the amount of related problems and all of types in the field did not meet the audit standard, thus it is required to manage budgetary execution effectively. In terms of Public Safety Division, the problem was related to budgetary allocation prior to execution, such as overlap in other works, excessive and underestimate appropriation, and inappropriate business plans. Director General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did not meet the standard of law system maintenance,

Given the light of the result of analyzing programs, traffic safety and securing communication was the most problematic and support for police administration, crime prevention and protecting the disadvantaged, educating professional police officers, and establishment of policing infrastructure were required to be reformed in sequence.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demanded to check budgetary execution and the process in business plans on a regular basis. Additionally, in case of using budget in

inappropriate parts, tough penalty including reduction of budget in related to the local police should b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importance of budgetary execution. Moreover, because of the fact that a part of problem of budgetary execution was originally caused by the budgetary allocation, it is advised to allocate police budget using the budget proposal of National Finance Act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ey words : Budget, Settlement of Accounts, Budget on Operation of Program,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olice.**